

## 정관 변경 신·구 대비표

현 행(구)	개 정(신)
<p><b>제3조(사업)</b>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</li> <li>2.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</li> <li>3.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</li> <li>4.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</li> <li>5. 사회적 경제 및 비영리 섹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</li> <li>6.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</li> <li>7. 모금, 홍보, 장학 사업</li> <li>8.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</li> <li>9.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</li> <li>10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 <p>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<b>제3조(사업)</b>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</li> <li>2.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</li> <li>3.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</li> <li>4.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</li> <li>5. 사회적 경제, 비영리 섹터,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, 육성, 교류, 협력, 투자, 지원, 공간 사업</li> <li>6.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</li> <li>7. 모금, 홍보, 장학 사업</li> <li>8.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</li> <li>9.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</li> <li>10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 <p>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동산임대 및 전대사업</li> <li>2. 홍보 제작물의 판매사업</li> <li>3.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</li> </ol>

**제40조(재산구분)**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2. 부동산
3.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, 기부금, 후원금 등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.

**제41조(재산의 관리)**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 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

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0조(재산구분)**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2. 부동산 (삭제)
3.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, 기부금, 후원금 등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.

**제41조(재산의 관리)**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 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

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삭제)

\*목적사업 실현과 경비 충당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2층 주택을 사무실 및 커뮤니티 공간 용도로 구입하게 되어 해당 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높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

1. (제3조)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항목을 신설하고,
2. (제40조) 부동산을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40조 2항의 2호 삭제
3. (제41조) 5항은 2항과 중복되어 41조 5항 삭제

하는 방식으로 정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.